24. 12. 16. 오후 2:06 인쇄

병역준비역 편입

개요

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병역의무가 발생하여 병역준비역에 편입, 병적관리가 시작됨

병적관리: 거주지 지방병무청장

병적관리의 예외 적용대상

주민등록이 없는 사람 : 등록기준지 지방병무청장

국외출생자 등 국내 거주지 설정 사실이 없는 사람 : 등록기준지 지방병무청장

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: 주민등록 말소지 지방병무청장

「병역법」제6조의2(병역변경 등의 통지) 신설: 공포 '22.1.4. / 시행 '22.7.5.

병역준비역으로 편입된 사실과 병역이행 절차 등 안내

병역준비역 편입 안내문 보기 미리보기